<전 매체> 2022년 2월 23일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 **보도참고자료**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• 문의 :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정의경 과장(044-204-7821) 김승택 서기관(7826)

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(목)부터 신청 · 지급

□ 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'2021년 4분기 보상기준' 의결

❶ 보상대상을 기존 **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** 대상 시설에서 **시설 인원제한 조치** 대상 시설까지 **확대**

❷ **보정률**을 80%에서 **90%**로 **상향**하고, 분기별 하한액도 **10만원**에서 **50만원**으로 **인상**

❸ **지역·시설 평균 통계** 등을 **적극 활용**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**간편**하고 **유리**한 산정방식 적용

□ **3월3일(목)**부터 손실보상금 **신청** 및 **지급 개시**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권칠승, 이하 중기부)는 **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**를 **개최해** '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'을 **의결했**다고 밝혔다.

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**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**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**소상공인 업계**의 **요구**를 **적극 반영**했다.

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**<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>**를 **행정예고했**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**3월 3일(목)**부터 **손실보상금 신청·지급**을 **시작**할 예정이다.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>

① 보상대상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❶**2021년 10월 1일**부터 **12월 31일**까지 ❷**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**를 이행해 ❸**경영상 심각한 손실**이 발생한 ❹「**중소기업기본법**」**상 소기업**이다.

2021년 3분기에는 **집합금지**와 **영업시간 제한 조치**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**2021년 4분기**에는 **시설 인원제한 조치**를 이행한 시설도 **보상대상**에 **추가**했다.

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**식당·카페, 이·미용업, 결혼식장·돌잔치전문업, 실외 스포츠 경기장** 등도 **보상대상**에 포함된다.

② 산정방식

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❶**2019년** 동월 대비 **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**에 ❷**방역조치 이행기간**과 ❸**보정률**을 적용해 산정된다.

다만,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**보정률**과 **하한액**이 상향됐으며 **보상금 산식**도 소상공인에게 **보다 유리한 방식**으로 **변경**된다.

먼저, 보정률이 80%에서 **90%**로 **상향**됐다.

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**보정률**은 **2021년 3분기**에 **80%**였으나 **방역조치**로 인한 **피해**가 **소상공인 등**에 **장기간 집중**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**90%**로 **상향**했다.

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**50만원**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**보상금액**이 **적은 영세 소상공인** 등이 **보다 두텁게 보상**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**지역·시설 평균값**을 **적극 활용**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**지급**이 **지연**되던 사례를 **대폭 축소**할 계획이다.

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**영업이익률**에 **개업 초기 투자비용**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**2020년 개업자**의 경우 **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**와 **2019년 업종별 평균값**(단순경비율 등) 중 **유리한 수치**를 적용한다.

<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>

2021년 4분기 보상금은 **지난 1월 선지급**된 **500만원**을 **공제**한 이후 **남은 금액**이 지급된다.

만약 **2021년 4분기 보상금**이 **500만원 미만**인 경우, 공제 후 **남은 선지급금**은 **2022년 1분기 보상금** 지급시 **추가 공제**될 예정이다.

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, **과세자료**의 **오류** 또는 **수정신고**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**차액**을 **추가 지급**하거나 **상계**한다.

< 보상금 신청 시기 >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**온라인**을 통해 **최대한 빠르고 간편**하게 **신청**하고 **지급**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**3월3일(목)**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**신청**이 시작된다.

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"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**3분기보다 폭넓고, 두텁게 보상**하는데 **중점**을 두었다"면서

"**소상공인** 등의 **어려움**을 하루라도 빨리 **덜어드릴 수 있도록**, 손실보상금을 **신속히 지급**하는데 **최선**을 **다하겠다**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(☎ 044-204-78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	2021년 4분기 손실보상 Q&A

1	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

○ ‘21.4분기에는 **보상대상**을 **확대**하고 **보상금액**을 **상향**하는 등 **소상공인**에게 **보다 유리한 방식**으로 변경

① ‘21.3분기에는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, **’21.4분기**부터 **시설 인원제한*** **조치**도 보상

* 좌석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1m 거리두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, 수용인원 제한 등

② **보정률**을 80%에서 **90%**로 **상향**

- **방역조치**가 **지속 연장**되고, 이로 인한 **피해**가 **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**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

③ **분기별 하한액**도 10만원에서 **50만원으로 인상**

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**지역·시설 평균값**을 **적극 활용**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**사각지대**를 **해소**

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**2020년 개업자**의 경우, **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**와 **2019년 업종별 평균값**(단순경비율 등) 중 **유리한 수치 적용**

2	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??

○ **시설 인원제한 조치**는 시설 내 **밀집도**를 **완화**하는 **조치**로서,

- 좌석 한 칸 띄우기, 테이블간 1m 거리두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,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

○ 대표적으로 **이·미용업, 결혼식장·돌잔치전문업, 실외 스포츠 경기장, 전시회·박람회, 키즈카페** 등이 해당함

-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**식당·카페** 등도 **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** 포함

3	‘21.4분기 및 ’22.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‘21.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?

○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**‘21.4분기 손실보상금**에서 **선지급금 500만원**을 **차감**한 이후 **남은 금액**을 **지급**

○ 만약 ’21.4분기 **손실보상금**이 **선지급금 500만원 미만**인 경우, 차감 후 **잔여 선지급금**을 **’22.1분기 보상금** 지급시 **추가 공제**

- ‘22.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**잔여액 발생**시, 해당 금액을 **1% 초저금리 융자**로 전환

참고 2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

구 분		2021년 4분기 손실보상	2021년 3분기 손실보상
보상대상		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**시설 인원제한 조치**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	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
방역조치 이행기간		2021년 10월 1일 ~ 12월 31일	2021년 7월 7일* ~ 9월 30일 *「소상공인법」 개정법률 공포일
보상금 산정 방식	산식	□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	좌 동
	매출액 추정	□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, **지역·시설별 평균 통계**를 **활용**하여 **추정**	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
	보정률	**90%**	80%
	상한액	1억원	좌 동
	하한액	**50만원**	10만원
기타		□ ’21.3분기 정산금액을 ’21.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□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	-